

철마산터널 축조공사 민자유치시설사업
실 시 협 약

1997. 3. 13.



인 천 광 역 시
철 마 개 발 주 식 회 사

실 시 협 약

인천광역시장과 철마개발 주식회사는 인천광역시 철마산터널 민자유치사업과 관련하여 1997. 3. 13.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협약은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자본 유치촉진법, 동법 시행령, 철마산터널 축조공사 민자유치시설사업 기본계획에 따라 철마산터널 민자유치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주무관청인 인천광역시장과 사업시행자인 철마개발 주식회사간에 필요 한 사항에 대하여 협약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협약에 달리 규정되지 아니하는 한, 본 협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본 조항에서 정의되지 않은 용어는 민자유치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의 정의에 따른다.

1. “감리전문회사” : 본 협약 제22조에 따라 지정된 감리전문회사를 말한다.
- 2.. “건설기간” : 본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날로부터 운영개시일의 전날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 3 “건설기술관리법” : 대한민국법률 제5287호 건설기술관리법을 의미하며, 그 수정 및 개정의 경우를 포함한다.

4 “공사기간” : 본 사업시행자가 본 사업에 관한 공사를 착수한 날로부터 민자 유치촉진법에 따라 인천광역시장에 준공확인을 신청한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5 “관리운영권” : 본 사업에 대하여 인천광역시장이 민자유치촉진법 및 본 협약에 따라 본 사업시행자에게 설정하는 사회간접자본시설 관리운영권으로서 본 사업시설을 유지·관리하고 시설사용자로부터 통행료를 징수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6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 대한민국법률 제4868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의미하며, 그 수정 및 개정의 경우를 포함한다.

7 “대주단” : 자금차입계약상의 채권자단을 의미한다.

8 “무상사용기간” : 본 사업시행자가 관리운영권을 설정받아 본 사업시설을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는 기간을 의미한다.

9 “민자유치촉진법” : 대한민국법률 제4773호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민간자본 유치촉진법을 의미하며, 그 수정 및 개정의 경우를 포함한다.

10 “민자유치촉진법 시행령” : 대한민국 대통령령 제15274호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시행령을 의미하며, 그 수정 및 개정의 경우를 포함한다.

11 “본 사업” : 시설사업기본계획에서 특정된 철파산터널 축조공사사업으로서 터널, 접속도로, 지하차도 및 관리사무소등의 시설사업을 말한다.

12. “본 사업기간” : 사업시행자 지정일로부터 무상사용기간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13. “본 사업부지” : 시설사업기본계획 및 실시계획에서 특정된 본 사업시설의 건설 및 관리운영에 필요한 부지를 말한다.

14. “본 사업시설” : 시설사업기본계획 및 실시계획에서 특정된 본 사업의 대상 시설로서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부평구 산곡동간 철마산터널, 접속도로, 지하차도 및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15. “본 사업시행자” : 본 협약의 당사자인 철마개발 주식회사를 의미하며, 그 적법한 승계인을 포함한다.

16. “본 협약” : 본 실시협약을 의미하며, 그 수정, 변경 및 개정의 경우를 포함한다.

17. “본 협약 당사자” : 본 협약의 당사자인 ~~인천광역시장~~과 본 사업시행자를 말한다.

18. “불가항력사유” : 본 협약 당사자의 합리적인 통제 범위를 벗어나는 사태를 의미하며, 다음의 사태를 포함한다.

- i) 전쟁, 기타 적국의 침공행위
- ii) 폭동, 혁명 또는 내란
- iii) 예측불가능한 재해(자연재해에 한정하지 아니함)

19. “사업계획” : 본 사업시행자가 본 사업과 관련하여 1996. 9. 3.자로 인천광역시장에 제출한 사업계획서상의 사업계획 내용을 의미하며, 그 수정, 변경 및 개정의 경우를 포함한다.

20. “산업안전보건법” : 대한민국법률 제4916호를 의미하며, 그 수정 및 개정의 경우를 포함한다.

21. “시공자” : 본 사업시행자로부터 본 사업시설의 건설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22.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대한민국법률 제5141호를 의미하며, 그 수정 및 개정의 경우를 포함한다.

23. “시설사업기본계획” : 인천광역시 고시 제1996-86호('96.6.5.)에 의한 철마산 터널 축조공사 민자유치시설사업기본계획을 의미하며, 그 수정, 변경 및 개정의 경우를 포함한다.

24. “실시계획” : 본 사업시행자가 민자유치촉진법 및 본 협약에 따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의 승인을 받은 본 사업의 실시계획을 의미하며, 그 수정, 변경 및 개정의 경우를 포함한다.

25. “운영개시일” : 본 사업시행자가 본 사업에 대한 주무관청인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본 사업에 대한 준공필증을 교부받고, 관리운영권을 설정받아 실제로 본 도로를 개통하고 통행료의 정수 등 그 운영을 개시하는 날을 의미한다

26. “인천광역시” :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인 인천광역시를 말하며, 그 명칭변경 및 행정구역 개편의 경우를 포함한다.

27. “자금차입” : 본 사업시행자가 본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타인으로부터 차입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28. “자금차입계약” : 자금차입을 위한 계약을 의미한다.

29. “제세공과금” : 본 사업의 시행, 준공, 등기 및 소유권 이전과 관련한 취득세, 등록세, 부가가치세 등 일체의 세금 및 공과금과 기타 법률에 의하여 부과되는 각종 부담금을 의미한다.

30. “총사업비” : 본 사업시설의 건설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업비의 총액이며 민자유치촉진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산정된다.

31. “총민간사업비” : 총사업비에서 본 협약 제8조에 따라 인천광역시가 부담하는 사업비와 제9조에서 인천광역시가 부담하기로 하는 보상비를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32. “총민간투자비” : 총민간사업비(민자유치촉진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9호의 이윤 제외), 예비비(물량변동비, 물가변동비) 및 건설이자를 합한 금액을 말한다.

33. “최초 통행료” : 본 협약에 따라 운영개시일에 적용할 통행료를 의미한다.

34. “통행료” : 본 협약에 따라 본 사업시행자가 본 사업시설의 사용자로부터 징수하는 통행료를 말한다.

35. “통행료 수입” : 본 사업시행자가 징수하는 통행료의 총수입을 말한다.

36. “할인율” : 시설사업 기본계획 5.2-1항의 통행료등의 함수관계식에서 건설비용 등의 현금흐름을 현재가치로 환산할때 사용하는 계수를 말한다.

37. “회계사” : 대한민국에서 공인회계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회계법인 중에서 본 협약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지정하는 회계법인을 말한다

제2장 기본약정

제3조 (사업시행자의 지정)

인천광역시장은 민자유치촉진법 및 본 협약에 따라 본 사업시행자를 본 사업에 대한 사업시행자로 지정하고, 본 사업시행자에게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 ① 실시계획 및 본 협약에 따른 본 사업시설 실시설계와 건설
- ② 제1항의 건설을 위한 본 사업부지의 무상사용

③ 제1항에 따라 설치된 본 사업시설의 무상 사용, 수익

제4조 (관리운영권의 설정)

① 인천광역시장은 본 사업시설의 준공 후 지체없이 본 사업시행자에게 관리운영권을 설정하기로 한다. 다만 지하차도시설은 제외한다.

② 본 사업시행자에게 부여되는 무상사용기간은 본 협약에 따라 연장 또는 단축되지 아니하는 한 운영개시일로부터 25년간으로 하며, 동 기간동안 관리운영권이 존속하는 것으로 한다. 단, 준공 후 시운전 및 본 사업시설의 홍보 등의 사유로 통행료를 징수하지 않는 기간은 무상사용기간에서 제외한다

제5조 (본 사업시설의 귀속)

본 사업시설의 소유권은 민자유치촉진법 및 본 협약에 따라 준공과 동시에 인천광역시에 귀속된다.

제6조 (사업시행자의 의무 및 권한)

① 본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제반법규 및 규정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할 책임과 의무를 지며, 본 사업의 시행과 관리운영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도록 성실히 노력한다.

② 본 협약서에 달리 규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을 본 협약서에 따라 자신의 위험과 비용으로 수행하기로 한다.

③ 본 협약 및 관련법규에서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인천광역시장은 본 사업기간동안 제3조 및 제4조에서 정한 본 사업시행자의 자격 및 권한과 권리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지 못한다.

제3장 총민간사업비 및 인천광역시가 부담하는 사업비 등

제7조 (총민간사업비의 산정)

① 총민간사업비중 순공사비는 우선 변경사업계획서에 제시된 금액(320.5억원, 고시일 불변가격 기준)으로 하되 실시설계시 불가피한 사유로 변경될 경우 설계 감리회사의 확인을 거쳐 실시계획승인시 확정된 금액으로 한다.

② 총민간투자비중 조사비, 설계비, 부대비, 운영설비비, 제세공과금, 영업준비금, 예비비, 건설이자는 건설기간중 실제 집행한대로 정산하되 회계사의 확인을 거쳐 확정한다.

제8조 (인천광역시의 사업비 부담)

① 인천광역시는 본 사업시설 중 접속도로와 지하차도의 공사비를 부담한다.

② 인천광역시가 본 조항에 따라 부담하는 사업비중 순공사비는 변경사업계획서에서 제시된 금액(283.4억원, 고시일 불변가격 기준)으로 하되 설계감리회사의 확인을 거쳐 실시계획승인시 확정된 금액으로 한다.

③ 인천광역시가 부담하는 사업비 지원은 예산을 확보하여 민자유치촉진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및 인천광역시 보조금관리조례를 준용하여 본 사업시행자의 신청에 의하여 지급한다.

④ 인천광역시는 본 조항에서 정해진 사업비 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본 협약에 정한 바대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본 사업시행자가 본 조의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가 부담하는 사업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인천광역시가 지급을 지체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의 절차에 따라 처리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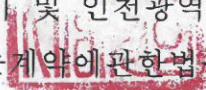
⑥ 인천광역시가 부담하는 사업비에 관하여 본 협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본 협약 당사자가 별도로 협의하여 정한 바에 따르기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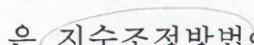
제9조 (보상업무)

① 본 사업부지의 매수업무와 이와 관련한 토지보상, , 분묘이전, 체신·한전주 이전 등 지장물에 대한 보상업무 및 이주대책은 인천광역시 예산으로 인천광역시장이 시행하며, 이와 관련된 제반서류는 사업시행자가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인천광역시장은 보상업무의 지체로 인하여 공사가 지연되지 않도록 보상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10조 (총민간사업비 또는 인천광역시가 부담하는 사업비의 변경)

① 본 협약 체결이후 물가변동, 설계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본 협약에서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총민간사업비 및 인천광역시가 부담하는 사업비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 의 관련규정에 따라야 하며 감리전문회사의 확인을 거쳐 인천광역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물가변동으로 인한 총민간사업비 및 인천광역시가 부담하는 사업비의 변경은 에 따르며, 본 사업시행자는 착공후 3개월내에 공사비 구성항목별 지수와 산출근거를 인천광역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물가변동으로 인한 위 사업비의 변경기준일은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일(1996. 6. 5.)로 한다.

제4장 공사에 관한 사항

제11조 (실시계획의 승인)

- ① 본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자 지정일로부터 240일 이내에 인천광역시장에게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단, 인천광역시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② 인천광역시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민자유치촉진법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여부를 본 사업시행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 (행정상 지원)

시설사업기본계획 6.6-2항에 의한 행정절차 이외에는 본 사업 추진과 관련된 행정절차는 본 사업시행자가 추진하며 인천광역시장은 본 사업시행자가 추진하는 행정절차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3조 (업무감독)

인천광역시장은 민자유치촉진법에 따라 본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본 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감독한다.

제14조 (공사기간)

- ① 본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36개월로 한다. 단, 인천광역시 민자유치심의위원회의 심의조건을 수용하여 공법 및 구간 등의 변경으로 인하여 공기연장이 필요한 경우 설계감리의 확인을 거쳐 실시계획승인시 공사기간을 확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 사유, 인천광역시장의 귀책사유, 기타 본 사업 시행자에게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공사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공사기간을 연장한다.

제15조 (공사의 착수)

① 본 사업시행자는 공사착수일 15일 이전에 시공자가 작성하여 감리전문회사가 확인한 착공계를 인천광역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본 사업시행자는 매년 1월말까지 시공자가 작성하여 감리전문회사의 확인을 거친 본 사업의 전체 공정과 당해 년도 시공분이 표시된 설계도서를 인천광역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본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 확정 전에 인천광역시의 승인을 받아 시공자로 하여금 이 공사를 착공하게 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시공자는 사전에 공사시공 계획서, 구조물 표준횡단면도, 시공방법 등에 대하여 감리전문회사의 지시와 감독을 받아야 한다.

④ 본 사업시행자는 민원발생, 보상지연 또는 설계변경 등의 사유로 실시계획 승인후 공사개시일까지 공사의 개시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때에는 인천광역시장과의 협의에 의하여 공사개시일을 연기할 수 있다.

제16조 (이행보증금)

① 본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의 이행보증을 위하여 총민간사업비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보증금(현금 또는 유가증권, 은행의 지급보증서 또는 보증보험증권)을 사업시행자 지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인천광역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본 사업시행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본 사업수행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제1항의 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1조를 준용하여 인천광역시에 귀속된다.

제17조 (지체상금)

본 사업시행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공사기간(본 협약에 의한 연장기일 포함)내에 공사를 완공하지 못하는 경우, 본 사업시행자는 총사업비 중 공사비(본 협약 제19조에 의하여 감리전문회사의 기성검사를 받고 그 결과가 인천광역시장에 통보된 기성고에 상당하는 금액은 제외)를 기준으로 ~~제작~~ 실제완공일까지 1일당 0.1%에 해당하는 금액을 인천광역시장이 발행한 납부고지서에 따라 지체상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18조 (공사의 도급)

① 본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공자들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본 사업시행자는 시공자를 지정 또는 변경시 그 계약방법 및 계약조건 등을 인천광역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본 사업시행자는 시공자가 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도급할 경우 건설업법 제22조에 따른 감리전문회사의 확인을 거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감리전문회사는 위 하도급을 받은 자가 하도급 받은 공사의 시공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건설업법 제23조에 따라 본 사업시행자에게 필요한 조치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④ 본 사업시행자가 지정한 시공자 또는 그 하도급자의 시공과정에서 노임체불이 발생할 경우 본 사업시행자는 시공자 또는 하도급자의 기성부분중 체임노임을 직접지급하기로 한다.

제19조 (기성검사)

본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시설 공사에 대해 시공자로 하여금 감리전문회사에 의한 분기별 기성검사를 받도록 하고 감리전문회사는 기성검사 완료후 지체없이 그 결과를 본 사업시행자와 인천광역시장에 통보하도록 한다

제20조 (민원처리)

본 사업시설에 대한 공사와 직접 관련하여 발생하는 민원사항은 본 사업시행자의 책임하에 처리한다. 단, 본 협약 제9조의 보상업무에 관련된 민원은 인천광역시장이 처리하여야 한다. 인천광역시장은 본 사업시행자가 처리하여야 할 민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본 사업시행자의 요청에 따라 중재 및 해결방안 강구 등 필요한 행정적 지원과 협조를 하기로 한다.

제21조 (안전관리)

본 사업시행자는 시공자로 하여금 안전시공을 위한 안전조직을 갖추어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기술관리법에 명시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하며 안전사고 발생시 본 사업시행자의 책임하에 시공자로 하여금 수습하도록 하고, 인천광역시장은 필요시 감리전문회사를 통하여 안전관리에 관한 지도, 감독을 할 수 있다

제22조 (기술심의 및 책임감리)

- ① 본 사업시행자는 건설기술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기술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감리전문회사의 설계감리를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본 사업시행자는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라 실시설계시 설계감리를, 공사시는 공사전면책임감리를 하게 하여야 한다.

③ 본 사업시행자는 인천광역시장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매분기의 건설공사 감리비를 그 분기가 시작되는 달의 15일까지 현금(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금융기관이 발행하는 자기앞수표 포함)으로 예치하여야 하며 그 사실을 인천광역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본 사업시행자는 인천광역시장이 확인한 공사감리실적에 따라 분기별로 감리비를 감리전문회사에게 지급하고 그 결과를 인천광역시에 통보한다.

⑤ 인천광역시장은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감리전문회사를 선정하며 이때 사업시행자는 감리전문회사를 추천할 수 있으며, 선정된 감리전문회사와 지명경쟁을 통한 감리계약을 체결한다.

⑥ 시공자와 그 하도급자는 본 사업시행자와 감리전문회사간에 체결된 감리계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⑦ 인천광역시장은 감리전문회사의 감리업무수행을 감독한다.

⑧ 감리 선정 등에 대하여는 건설기술관리법의 절차를 준용한다.

제23조 (보험가입)

본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계획에 제시된 바와 같이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5장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제24조 (준공검사)

① 본 사업시행자는 준공예정일 45일전까지 시공자가 작성하여 감리전문회사가 확인한 확정설계도서를 인천광역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본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시설의 완공 3개월 전에 책임감리원으로부터 예비 준공검사를 받아야 하며, 완공후 즉시 감리전문회사의 준공검사결과를 첨부한 본 사업에 대한 공사준공보고서를 인천광역시장에 제출하고 준공확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인천광역시장은 준공확인신청을 접수한 즉시 준공확인을 실시하고, 준공확인필증을 본 사업시행자에게 교부하기로 한다. 인천광역시장은 본 사업시행자가 준공확인필증을 교부 받은 후 즉시 본 터널에 대한 관리운영을 개시할 수 있도록 미리 본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운영개시일, 최초 통행료 기타 필요 사항을 확정하여야 한다.

③ 본 사업시행자는 제2항에 따라 준공확인필증을 교부받은후 6개월 이내에 본 터널의 건설과 관련한 건설지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 비용은 본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제25조 (유지관리)

① 본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과 본 협약의 규정에 따라 본 사업시설을 유지보수 및 관리하여야 한다.

② 본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시설의 기능이 유지되도록 유지보수를 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공익목적에 맞도록 본 사업시설을 관리하여야 한다.

③ 본 사업시행자는 운영개시일 3개월 전까지 유지보수 및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인천광역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매년 말까지 다음 년도의 유지보수계획을 인천광역시장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본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시설에 대하여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 인천광역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정밀안전진단을 시행하게 하거나 긴급보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26조 (이용차량 자료제출)

본 사업시행자는 매년도의 ¼분기 중에 인천광역시장에게 본 사업시설에 대한 전년도의 교통량 현황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인천광역시장은 교통량 현황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본 협약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선정한 제3의 기관에 그 확인을 의뢰할 수 있다.

제27조 (할인율)

① 할인율은 본 사업시행자가 사업계획에서 제시한 7.31%로 한다.

② 실질기준금리(명목기준금리에서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차감한 금리)가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시점의 실질기준금리와 비교하여 현격하게 변동한 경우에는 할인율을 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할인율은 사업시행자의 출자자본에 대한 기회비용과 본 사업시행자에 대한 경제적 이윤으로서 민자유치촉진법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9호의 이윤이 확보되도록 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준금리는 3년 만기 은행보증사채 유통수익율(한국은행조사 통계월보상의 금리)로 한다.

③ 출자자본에 대한 기회비용은 기준금리에 ~~기산금리~~(공사기간중 : 위험보상율, 운영기간중 : 유동성보상율을 의미함) 0.5%를 합한 수준으로 한다.

제6장 통 행 료

제28조 (통행료의 징수)

- ① 본 사업시행자는 본 협약에 따라 무상사용기간 동안 본 사업시설을 통행하는 차량들로부터 통행료를 징수한다.
- ② 본 사업시행자는 운영개시일 20일전까지 민자유치촉진법 시행령 제21조 제2항에 따른 신고서를 인천광역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③ 통행료 징수방식이 본 사업시행자의 자의에 의하지 아니하고 정부 또는 인천광역시장의 교통체계 개선대책에 의하여 변경될 경우 통행료 징수방식 변경에 따른 비용부담은 원칙적으로 인천광역시가 부담하되, 그 구체적인 내역, 비용부담비율 등을 그 변경, 시행 당시 본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29조 (최초 통행료)

① 최초통행료는 시설사업기본계획상의 “5. 2-1 사업계획서 작성기준”에서 제시된 함수관계식을 준용하여 산정하되, 총민간사업비(실제 집행된 예비비 포함)는 건설기간중의 자본조달비용을 반영하여 본조 제2항 내지 제3항에 따라 준공시점(운영개시일)의 현재가치로 환산한다. 다만, 운영개시일 이전에 불가항력 사유, 인천광역시장의 귀책사유 및 기타 사업시행자에게 책임없는 사유에 기인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손실이나 비용이 발생한 경우 등에는 이를 반영하여 최초 통행료를 산정하기로 한다.



② 건설기간중 출자되는 자본금으로 조달된 총민간사업비는 출자시점을 기산일로하여 1년만기 산업금융채권 유통수익율(한국은행조사 통계월보상의 월별기준금리)에 0.5%를 가산한 금리를 적용하여 준공시점의 현재가치로 환산한다.

③ 건설기간중 대주단차입금으로 조달된 총민간사업비는 대주단차입금의 실제 조달비용을 가산하여 준공시점의 현재가치로 환산한다.

④ 본 사업시행자에 대한 경제적 이윤으로서 민자유치촉진법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9호의 이윤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상한다. 이 경우 경제적 이윤은 준공시점의 현재가치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산정되는 최초통행료가 인천광역시내에 있는 유사한 민자터널의 통행료와 현격한 차이가 있어 인천광역시장이 본 사업의 최초통행료를 조정하는 경우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조정된 통행료가 제1항에 의해 산정된 통행료보다 낮은 경우 총민간투자비중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지원한다
2. 조정된 통행료가 제1항에 의해 산정된 통행료보다 높은 경우 무상사용기간을 조정한다.

제30조 (추정 통행료수입)

인천광역시장과 본 사업시행자는 최초 통행료 산정시 그 최초 통행료와 본 사업시행자가 사업계획서에 제시한 추정 교통량을 기준으로 무상사용기간 동안 예상되는 추정 통행료수입을 정한다.

제31조 (통행료의 조정)

① 통행료는 원칙적으로 연1회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다. 본 사업시행자는 매년도 통행료를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 범위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인천광역시장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본 사업시행자는 통행료 조정을 하고자 하는 당해 년도 이전에 본항에 의한 통행료 조정이 없었던 경우 이 기간 동안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누적적으로 합계한 범위내에서 신고할 통행료를 조정한다. 이 경우 인천광역시장은 민자유치법에 따라 본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그 통행료를 조정하기로 한다

② 제1항에 추가하여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본 사업시행자는 인천광역시장에 대하여 통행료 또는 무상사용기간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인천광역시장은 민자유치촉진법에 따라 본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이를 조정하기로 한다

1. 본 사업시행자의 운영개시일 이후의 매 회계년도말까지의 통행료수입이 제30조의 추정 통행료수입과 비교하여 10%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
2. 불가항력 사유 또는 인천광역시장의 귀책사유 기타 본 사업시행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본 사업시행자에게 손실 또는 비용 등이 발생한 경우
3. 이자율의 현격한 변동 등으로 인하여 본 사업시행자에게 운영자금부족이 크게 발생하거나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협의가 개시되거나 제1항 또는 본 협약 제29조에 따라 본 사업시행자가 정한 통행료가 사용자의 이익을 현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인천광역시장이 협의를 요청한 경우 그 협의 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적정 통행료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때에는 회계사를 지정하여 그 적정 통행료를 산정하도록 한다. 본 협약 당사자는 그들이 보유하는 통행료 산정과 관련한 모든 정보를 회계사의 요청에 따라 즉시 제공하여야 한다. 회계사는 위와 같이 통행료의 산정을 의뢰받은 후 30일 이내에 본 협약 당사자 쌍방에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④ 통행료 징수방식의 변경에 의하여 100원 단위 이하로 징수할 수 있게 되지 않는 한 통행료는 본 협약 제30조의 추정통행료 수입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원칙적으로 100원 단위로 결정한다. 단, 본조에 의하여 산정된 적정 통행료 중 100원 미만의 금액이 당해 통행료 조정시 반영되지 못하여 전체 추정통행료수입에 영향을 주는 경우에는 다음 통행료 조정시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7장 인천광역시의 지원

제32조 (재정지원)

①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본 사업시행자는 인천광역시장에 대하여 민자유치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장은 위 신청을 받은 후 보조금의 액수, 지급시기와 지급방법 등을 본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1. 제29조 또는 제31조에 정한 사유의 발생시 통행료 또는 무상사용기간의 조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그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증가 요인 중 일부만이 반영되어 조정이 이루어진 경우
2. 통행료 또는 무상사용기간의 조정만으로는 본 사업시행자의 손실, 비용 또는 운영자금의 부족 등이 해소되지 ~~이루어지~~하는 경우
3. 본 협약 제29조 제5항에 따라 인천광역시가 총민간투자비의 일부를 지원하기로 한 경우
4. 본 사업시행자의 해산을 방지하거나 통행료를 적정한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② 인천광역시장이 전항의 보조금의 교부 대신에 장기대부를 하기로 결정한 경우 인천광역시장은 장기대부의 조건 등에 관하여 본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결정하기로 한다.

③ 본 사업시행자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재정지원을 요청하면, ~~인천광역시장은~~ 첫 도래하는 예산편성시(추가경정예산 포함) 이를 반영하도록 한다.

제33조 (행정적 지원)

① 인천광역시장은 본 사업시설을 이용하는 적정 통행량을 유지하기 위하여 연계도로의 건설 및 버스노선을 개설하여 주는 등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인천광역시장은 본 사업시행자가 시설운영의 효율화를 위하여 징수방법의 자동화등을 시행하는 경우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인천광역시장은 본 사업시설을 무단으로 통과하는 차량등에 대한 가산금의 부과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조례 제정 등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장 협약의 종료

제34조 (협약의 종료)

① 다음의 경우 인천광역시장은 본 협약을 해지하고 민자유치촉진법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의 취소 또는 관리운영권설정의 취소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1. 본 사업시행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실시계획 또는 본 협약 제15조 제4항에 의하여 정하여진 공사개시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도록 본 사업시설에 대한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본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법원의 확정 판결에 의한 파산 선고가 있는 경우
3. 본 사업시행자의 주주총회에서 본 사업시행자의 해산 및 청산을 결의한 경우
4. 민자유치촉진법 제41조 또는 제42조에 의한 경우 (단, 이 경우 인천광역시장은 가능한 범위내에서 본 사업시행자에게 사전 통지하여 60일 이상의 기간동안 시정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 다음의 경우 본 사업시행자는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인천광역시장에 대한 본 협약 해지의 통지를 할 수 있고, 동 기간의 만료로 본 협약은 종료된다. 단, 본 협약 당사자간에 달리 합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본 협약 제31조 및 제32조에 정한 사유의 발생시 인천광역시장이 정당한 사유없이 통행료와 무상사용기간의 조정, 보조금의 교부 또는 장기대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본 사업시행자가 그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는 통지를 발송한 후 60일 이내에 그 사항이 시정되지 아니한 경우
2. 본 협약 제36조 제3항에 따른 협의 재개 후 60일 이내에 본 협약당사자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3. 자금차입계약이 사전종료하고, 그 종료 후 60일 이내에 이를 대체할 자금 제공자를 찾지 못하는 경우
4. 건설기간, 무상사용기간 중에 본 사업시설과 유사한 목적을 갖는 도로, 터널 또는 교량 등이 개설되어, 본 사업시설을 사용하는 교통량의 현격한 변동이 있어 통행료 또는 무상사용기간만의 조정으로 본 사업의 계속이행이 불가능할 경우
5. 인천광역시장이 본 협약 제8조에 규정된 사업비 부담 또는 제32조에 규정된 재정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지체하여 본 사업시설에 관한 공사이행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

③ 본 협약이 위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따라 해지되는 경우 인천광역시장은 본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본 사업시설(공사기간중인 경우에는 기성부분)의 그 해지 당시의 적정가치에 해당하는 금원을 본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④ 본 협약이 위 제1항 제4호 또는 제2항에 따라 해지되는 경우 인천광역시장은 본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본 사업시설(공사기간중인 경우에는 기성부

분)의 그 해지 당시의 적정가치에 관리운영권의 그 당시의 적정가치를 더하여 이에 해당하는 금원을 본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⑤ 위 제3항 및 제4항의 경우에 본 협약 해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적정가치에 대한 본 협약 당사자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때에는 회계사를 지정하여 그 적정가치를 산정하도록 한다. 본 협약 당사자는 그들이 보유하는 위 적정가치 산정과 관련한 모든 정보를 회계사의 요청에 따라 즉시 제공하여야 한다. 회계사는 위와 같이 해당 적정가치의 산정을 의뢰받은 후 30일 이내에 이를 산정하여 본 협약당사자 쌍방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⑥ 본 협약 당사자간에 회계사 지정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각각의 회계사를 지정하여 산정된 적정가치를 협의하여 인정한다.

⑦ 인천광역시장은 제3항 내지 제6항에 의하여 적정가치가 정하여지면 예산을 확보하여 해당 금원을 본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⑧ 본 협약이 위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해지되는 경우에 위 제3항 내지 제6항에 따른 금원의 지급시점까지 본 사업시행자가 대주단에 대하여 상환을 완료하지 못한 채무는 인천광역시장이 관계법령에 따라 동일조건으로 인수하거나 다른 사업시행자를 지정하여 이를 인수하게 하기로 한다. 본 제8항에 따라 인천광역시장이 본 사업시행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는 위 제3항 내지 제6항에 따라 인천광역시장이 본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할 금원에서 동 채무액에 상당한 금액을 공제하기로 한다.

⑨ 본 협약은 본 협약의 규정에 따라 사전 종료되지 아니하는 한, 본 협약 제4조에 규정한 무상사용기간의 만료와 함께 종료한다. 또한, 본 협약이 본 협약의 규정에 따라 사전 종료되는 경우에는 위 무상사용기간도 함께 종료된다.

⑩ 본 협약이 무상사용기간의 만료로 종료하는 경우 본 사업시행자는 다음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본 사업시행자는 무상사용기간 만료일 6개월전에 본 사업에 대하여 인천광역시장과 공동으로 시설점검을 실시한 후 무상사용기간 만료일에 본 사업시설에 대한 관리운영권을 인천광역시장에 인계한다.
2. 위 시설점검 결과 본 사업시설의 정상적인 기능유지를 위하여 수리 또는 보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무상사용기간 만료전까지 본 사업시행자의 비용으로 그 수리 또는 보수를 하여야 한다.

제9장 분쟁의 해결

제35조 (분쟁의 해결)

- ① 본 협약의 당사자는 본 협약등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쌍방간의 우호적인 합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 ② 제1항과 같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할 수 없는 경우 원칙적으로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규칙에 따른 상사중재에 의하여 해결한다. 이 경우 중재자는 대한상사중재원 소재지로 한다.
- ③ 본 협약과 관련된 민사재판의 합의관할은 인천지방법원으로 한다.

제10장 기타

제36조 (불가항력)

- ① 본 사업시행자가 불가항력 사유에 기인하여 본 협약에 따른 의무이행을 하지 못하는 경우 이에 대한 손해배상 기타 법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②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본 사업시행자는 그 사유를 알게 된 후 지체 없이 인천광역시장에 동 불가항력 사유의 발생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인천광역시장은 제2항에 의한 통지를 수령한 후 지체 없이 본 사업시행자와 협의를 개시하여 해당 불가항력 사유의 치유책 및 이에 대응한 본 협약의 변경여부에 관하여 합의하여야 한다.

제37조 (자금의 차입 등과 인천광역시의 협조)

인천광역시는 본 사업시행자가 총민간사업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차입을 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본 사업시행자가 자금차입과 관련하여 인천광역시의 동의 또는 협조를 요청할 때에는 인천광역시는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한다.

제38조 (기타 수익성 사업)

본 사업시행자는 차량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인천광역시장과 협의하여 무상사용기간 중 본 사업시설을 이용하여 수익성 사업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입금은 다음년도 통행료 결정에 반영하며 인천광역시장은 행정지원 조치 등 적극 협조한다.

제39조 (기타사항)

① 본 협약내용중 시설사업기본계획과 상이한 사항은 본 협약내용에 따라 시설사업기본계획의 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② 본 사업시행자는 지방업체의 육성을 위하여 접속도로 및 지하차도공사의 일부에 인천광역시 지방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

- ③ 건설기간 또는 무상사용기간 중에 민자유치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 등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를 촉진하기 위한 법령 및 제도가 개정되어 그 개정내용이 본 사업의 원활한 운영 또는 수익성 제고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협의에 의해 본 협약을 조정, 변경한다
- ④ 인천광역시는 본 사업기간 중에 본 사업시설과 관련된 시설을 건설할 경우 본 사업시행자와 우선적으로 협의하여야 한다.
- ⑤ 인천광역시장은 본 사업고시일 이후 개정된 민자유치촉진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5274호. 1997. 2. 13. 공포) 제17조에 의거하여 본 사업시행자의 실시계획승인시에 본 사업에 따른 시공이윤과 일반관리비를 ~~공사비~~에 산입하도록 한다.

제40조 (협약의 효력)

본 협약은 체결과 동시에 효력을 발생한다.



본 협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당사자는 첫머리에 기재한 날짜에 본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자 기명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1997. 3. 13.

인천광역시장

최기정

철마개발주식회사

대표이사

이연구



본 사업시행자의 출자회사는 본 실시협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위 같은 날 아래
와 같이 기명·날인한다.

광주 서구 광천동 49-1

주식회사 금호건설
대표이사 이서형



서울 중구 남대문로 5가 537

엘지건설 주식회사
대표이사 신승교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3-9

대림산업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정국



서울 마포구 도화동 292-20

일성종합건설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창열

